

照明實錄 太宗과 世子廢立

(제 4 회)

李 在 範

9. 태종우 (太宗雨)

여기에서 잠시 태종우 (太宗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오늘날 우리들은 6월 (음 5월) 초순에 내리는 비를 '흔히들 「태종우」라 일컫는다.

이 속설의 유래는 이러하다. 태종이 승하한 세종 4년 (1419)에는 초봄부터 심한 한발이 계속되었다. 그러한 한발은 그해 6월 (음 5월) 까지 계속되어 산천초목을 불태웠다. 태종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원망을 하다가, 그달 8일 (음 5월 10일)에 임종 (臨終)을 앞두고, 왕인 세종 (이때 태종은 세종에게 선위를 하고 상왕 [上王]으로 있었다. 과 대신들을 모아 놓고 유언을 했다. 『백성들이 깎어 죽는구나. 과인이 죽으면 하늘의 용 [龍]이 되어 이나라 삼천리에 풍족한 비를 내리게 할것이니라』 그날 태종이 승하하자 별안간 겹은 구름이 모여 들더니 많은 비가 내렸다. 그후 해마다 태종의 기일 (忌日)인 6월 8일경이 되면 반드시 비가 내렸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태종우」라는 속설이 전해져 내려 오고 있다.

이 태종우에 대하여 당시의 실록을 재조명하여 그 근거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당시 비를 비는 기우제 (祈雨祭)의 풍속도 아우러 적어 보기로 한다.

태종우라는 속설을 낳게하였던 태종의 승하년인 세종 4년의 기록을 살피기 전에 먼저 태종이 재위한 18년간의 한해 (旱害) 상황을 년차별로 검토해 본다.

2년. 6월부터 7월 까지 한해가 심하였으며 특히 경상도 (慶尚道) 지방이 더욱 심했다. 태종은 수라도 잘 들지 않으면서 하늘을 쳐다 보면서 슬피 울었다. 이로 인하여 병이 들었다. (因涕泣 日中猶不御膳 因而 不豫)

5년. 4월부터 가뭄이 계속되어 5월 20일에 기우제를 올렸다. 5월 23일에 큰 비가 내렸으며 태종께서 크게 기뻐 하였다. (二十三日 雨治上大喜)

7년. 심한 한발이 계속되었으며 6월 28일에 하늘에 자책하는 호소문 (呼訴文)을 올렸다는 것은 이미 밝힌바와 같다.

그해 7월 8일에 태종은 스스로 사직교외 (社稷郊外)에 나아가서 원단 (圓壇)을 모아 놓고 친

히 비를 빌었다.

태종이 기우제를 끝내고 마지막 배례(拜禮)를 할때에, 갑작스러히 먹구름이 모여들면서 많은 비가 내렸다 한다. (社稷北郊 上出齊戒 值圓壇行祭之時 下庭祗拜時 乍雨)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 할 것이다.

10년. 봄부터 가뭄이 계속되었다. 6월 25일에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황희(黃喜)는 원단(圓壇)에서 기우제를 올렸다. 좌정승 성석린(成石璘)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스스로 정승의 인물이 아닌데도 그러한 자리에 있으니 하늘이 싫어하여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는 이유였다. 태종은 자신이 덕이 없어 한발이 계속된다고 자책을 하면서 성석린의 사직서를 돌려주었다. 그로부터 4일후인 29일에 큰비가 내렸다. (左政丞 成石璘 辭職曰 水旱相 仍妨賢 痘國之故 上曰 實予否德之所以也 二十九日 雨)

11년. 6월까지 한발이 계속 되었다. 토룡(土龍)을 만들어 세우고 비를 빌었더니 18일에 비가 내렸다.

14년. 5월부터 6월까지 한해가 계속되었다.

15년. 5월에 한해가 있어 태종은 수라를 들지 않으면서 스스로 덕이 없음을 자책. 군신하였다. 기우제를 지냈더니 29일에 큰비가 내렸다.

16년. 이 해는 한해가 우심한 해였다. 모내기 철인 5, 6월에 비는 내리지 아니하고 대지는 불타며 초목은 시들었다.

태종은 크게 심려를 했다.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비롯해서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南山), 한강(漢江)등에 기우제를 지냈다. 또한 홍인문(興仁門 = 東大門)밖에 훑으로 만든 용(龍)을 만들어 세웠었으며, 판좌군도총재(判左軍都摠制) 죄이(崔旼)로 하여금 홍천사(興天寺)에 나아가 아홉개의 머리가 달린

초룡(草龍)을 10여개나 만들어 세우게 하고 (造草龍 十余個 一身九頭), 승려(僧侶)들로 하여금 기우제를 지내게 했다.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아니했다.

태종은 밤잠을 자지 아니했다. 자고 새면 하늘만 쳐다 보았다. 5월 20일. 태종은 그간의 울분을 참지 못하여 편전에 나아가 하늘을 원망하면서 크게 울부짖었다.

『과인이 덕이 없어 하늘의 껴림과 노여움을 만나 이렇듯 한해가 우심하구나. 과인이 재해를 당하여 밤낮으로 근심하며 스스로 편할 날이 없었거늘, 어찌하여 이와같이 한해가 계속된단 말인가. 이러한 과인의 심정을 그 누가 능히 알 것인가. 과인이 언제 아름다운 웃을 탐하였던가. 또한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였던가. 그럼에도 어이하여 하늘은 과인을 이다지도 괴롭힌단 말인가……』

태종은 편전이 며나가도록 큰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때 용안(龍顏)에는 눈물이 흘러 턱을 적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上自始終 大言高聲痛泣 淚泗交瀨間)

태종이 얼마나 나라를 걱정하였는가를 미루어 알 수 있다. 다행히 6월 17일에 큰비가 내려 그해는 예상외로 풍년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태종우의 속설과 관련된 태종승하년의 강우상황을 살펴본다. 그가 승하한 세종 4년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태종은 그 해 5월 8일(음)에 승하했다. 그 날에 앞서 18일전인 4월 20일에 큰 바람과 함께 큰 비가 내렸다. 또한 그가 승하한 6일후인 5월 14일에 또다시 큰 비가 내렸다. 이러한 기록을 볼때 그의 승하를 전후해서 한해가 있었다고는 볼수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태종과 세

종께서는 4월 1일부터 그달 24일까지 강원도(江原道) 철원(鐵原) 근교에 사냥을 나갔으며, 귀로에 낙천정(藥天亭)과 신궁(新宮)에서 큰 잔치를 벌렸다는 기록으로 보아 더욱 그러하다.

앞에서 적은 한해 상황에서도 알 수 있거니와 한해가 발생하면 밤잠을 자지 않고 애태우던 태종이었는지라 그가 이렇게 아드님인 세종까지 데리고 유유자적, 수렵을 다니면서 즐기었다는 사실로 보아 그때는 풍족한 강우량이 있어 격양 가를 높이 부르던 태평성대(太平盛代)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전해지고 있는 태종우란 속설은 심한 한해속에서 태종이 승하하면서 비를 내리게 하리라는 유언에서가 아니라, 그가 재위시에 너무나도 많은 한해를 당하였으며 그때마다 너무나도 지극한 애민정신(愛民精神)으로 이에 대처하였기에 그로 연유한 것이라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할 것이다.

10. 자신(自新)의 맹서(盟誓)

태종 16년 9월 24일. 세자궁에서는 또다시 큰 사전이 일어났다.

이른바 「어리사전(於里事件)」이다.

전중추부사(前中樞府事) 곽선(郭璇)의 애첩(愛妾) 어리(於里)가 동궁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태종이 알게 되었던 것이다. 태종은 크게 탄식을 하였다.

『어찌 파인의 왕자(王子)가 세자 하나 뿐이겠는가. 그러나 파인은 이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장자(長子) 장손(長孫)으로 왕통(王統)을 잇게하고자 함이었는지, 이제 사세가 이와같이 되었으니 파인은 심히 부끄럽기 한이 없도다

……. 이는 모두 하늘의 뜻이로다……. (予子非一 然予長子 長孫爲之然矣 今至如比 予亦羞愧 此天爲之也)』. 그려면서 또다시,

『옛날 주(周) 나라에서는 태갑(太甲=周나라의 태자[太者])을 동궁(桐官)에 가두어 놓고 능히 나쁜 버릇을 고치게 하였거니와, 나의 세자는 능히 그 버릇을 고칠 수 없는 자이로다. (世子不能改者也)』

그때 태종은 이미 체념을 하는듯했다.

이를 둘러싸고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구구하였다.

황희(黃喜)는 세자를 두둔했다.

『이는 세자께서 아직 나이 젊은 탓입니다(世子年少)』

하륜(河崑)은 어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태종에게 동조했다.

『세자는 장차 대위(大位)를 이을 분이신데 이와같이 황음하니 이를 장차 어이하오리까(世子之職 將主宗社 今荒汗搖比 奈何 奈何)』

변계량(卞季良)은 세자를 감싸고 나섰다.

『세자는 원래 자질이 영특한 분이시니 이와같은 일시적인 과오를 고치지 못할분이 아니옵니다. 그러하온즉 주변에 있는 잔사한 무리들을 제거해 버리면 하루 아침에 허물을 고칠 것입니다. (天資過人 非難改者也 差除如此之輩 一朝遷善改過)』

이 사전으로 인하여 선공부정(繕工副正) 구종수(具宗秀) · 악공(李五功) · 진보(陳鋪) · 이귀수(李貴守) 등은 참형(斬刑)에 처하였고, 권보(權堡) · 이법화(李法華) · 이홍(李弘)은 각각 백대씩 매를 맞고 동래(東萊)와 해진(海珍)으로 키양을 갔다.

해가 바뀌어 17년 2월 17일. 태종은 마침내 엄명을 내렸다. 세자에게 동궁(東宮)을 떠나 그의

장인인 찬성(贊成) 겸한로(金漢老)의 맥으로 거처를 읊기게 하였다.

이는 중대한 일이었다. 일국의 세자로 하여금 궁궐을 떠나 사가로 나가게 한 것은 세자를 폐(廢)하기 위한 준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세자는 빈객 변계량을 통해 부왕에게 사죄를 드렸다. 이때의 세자의 태도에 대하여 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세자는 땅에 엎드려 울음으로 뉘우치며 가로되 『소자 이제부터는 또다시 이와같은 일을 하지 않을것입니다(世子伏地 每言 詛唏悔過曰 吾今而後願不復如是也)』』

그러나 태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일찌기 하늘에 맹서를 하고도 또다시 그러하거늘 과인이 무엇으로 믿고 용서 할것인가(曾指天為辭而今不能踐言吾何信聽)』

궁중에는 짙은 먹구름이 내려 깔렸다. 오늘이라도 당장 폐세자(廢世子)의 영이 내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태종의 어십은 그러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는 세자에 대한 마지막 기대는 버리지 아니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곁으로는 이와같이 엄하게하여 이를 계기로 세자의 일대반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태종은 은밀히 세자의 스승인 변계량을 불러들여 밀교(密教)를 내렸다.

『경들이 세자에게 그 잘못한 점을 극간하여 세자로 하여금 크게 뉘우치도록 하오. 그렇게 한 다음에 세자가 스스로 종묘(宗廟)에 나아가서 역대 선왕들 앞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굳은 맹서를 하도록 하오.

『卿等極陳世子之失使之悔悟俾世子誓告宗廟』

변계량은 태종의 은근한 밀령을 받고 곧 세자

에게로 갔다. 세자는 변계량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다.

『부왕의 노여움이 풀리지 아니하니 세자께서 스스로 종묘에 나아가서 자신(自新=새로운 마음가짐)의 맹서를 하여 보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내가 무슨 낮으로 종묘에 나아가겠소만은 그렇게하면 부왕의 용서를 받을수 있소이까? (我將何顏而見宗廟祖宗之靈之前乎)』

『그러하오나 부질없이 종묘에 고하고 또다시 전날과 같사오면 이러한 말씀을 드린 신 또한 함께 지탄을 받게 되오리다.』

세자는 군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당치않은 말씀이오. 내가 거짓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오. 스승은 내가 종묘에 고하는 글과 또한 부왕에게 사죄하는 상서문을 함께 지어주오. (是何言歟不謂是也我將告之)』

이리하여 세자는 2월22일에 스스로 종묘에 나아가 역대 선왕들의 영전에 회개문(悔改文)을 올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것이라는 굳은 맹서를 하였다. 이 회개문은 세자 제의 진심을 가름하는데 중요한 고증이 되므로 여기에 그 중요한 대목을 소개한다.

『아 부왕전하는 신 제(提)로 하여금 세자로 삼으시고 조석으로 훈계하시며, 또한 서연(書筵)을 따로히 두어 빈객(賓客)과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경서를 배우게 하였으며 의리의 도를 밝게하여 세자의 직분을 다하게 하였으나, 제는 오직 군부의 뜻과 스승의 교훈을 체득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른 선비를 멀리하고 간사한 무리들의 유혹에 빠져나와 되도록 거듭하여 군부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였음을, 이는 곧 조종(祖宗)의 덕에 누를 끼치는 바가 되므로 신의 죄가 크다할 것입니다.』

신이 비록 우매하나 조그만한 양심과 몇권의 배운 글이 있는데도 어찌 끝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말겠사오이까.

그러므로 여기 조종의 성령(聖靈) 앞에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고치고자 하는 몇가지 다짐을 밝히는 바이옵니다. (...臣雖愚昧 良心之發 約嘗讀書敢不洗心改行 圖惟厥終也哉 誓諸祖宗之靈 條具自艾 自新之目)

첫째, 이제부터 부왕의 가르침을 터럭만치도 어기지 아니할것이며, 잠시라도 소홀히 하지않고 항상 마음에 새겨두어 목숨이 다할때까지 힘써 지킬것이며 (繼自今於父王之教 一毫不敢或違 一時不敢或忽 恒存乎心 以盡其力 穢而後已)

둘째, 몸을 닦고 행동을 삼가며 부끄러움이 없도록 할것이며 (修身謹行 無致神羞)

세째, 조종의 뜻을 받들어 동기(同氣)와 구족(九族)을 더욱 친하고 더욱 뛰랑 할것이며, 사네째, 소인들을 멀리하고 정사(正士)들을 가까이하여 본연의 선(善)으로 돌아갈 것이며, (斥限儉小 親近正直 以充本然之善)

다섯째, 무릇 낮으로는 글을 읽고 밤으로는 깊이 반성하여 격치(格致)의 정(精)을 쌓고 성정(誠正)의 공을 돋돈히 할것이며,

여섯째, 참소함을 멀리하고 바른 말을 즐거히 들을것이며 (絕去讒慝 樂聞直言)

일곱째, 잠시라도 금색지황(禽色之荒)과 감주기음(甘酒嗜音)에 빠이지 아니 할것이며,

여덟째, 언어는 일신의 추기(枢機)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조심하여 항상 언행이 일치하도록 힘쓸것이오니 우러러 조종의 성령께 오서는 급여 살피시와 신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신이 직분을 다하도록 도와 주시오소서.

신이 이러한 맹서를 드린 이후에 스스로 지키

지 못하오면 조종성령의 엄한 벌을 받겠아옵니다. (既告之後 所渝此言 祖宗之靈 必罰無宥) 세자는 이와함께 부왕인 태종에게도 용서를 비는 글을 올렸다.

「신 제는 저윽이 생각 하옵건데 치극히 명완(冥頑)함에도 부왕전하께 오서는 신이 적장(嫡長)이라 하여 그 우매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세자로 책봉하여 주신지 이미 14년에 이르렀사옵니다. (竊念臣徧冥頑無似 父王殿下以臣嫡長 忘其愚昧 冊為世子 盖已十四年于茲矣)

전하께서는 종효의 도와 일용의 작은 일까지 자애롭게 가르쳐 주셨거늘 신은 다만 전하의 자애로움만 믿어 장차 나라를 다스리는 큰 계책을 생각치 아니하고 어리석은 아이들과 어울리고 작은 욕망에 사로잡혀 패도(敗度)하고 폐례(敗禮)한일을 수없이 저질렀아옵니다. (昵比頑童 惟欲之從敗度 敗禮固已數矣)

지난해 가을에 전하의 책망이 계실적에 신은 그때 약간 뉘우침을 하였으며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하늘에 맹서한바 있었으나 곧 오래가 아니하여 어린 습성의 탓으로 소인들의 괴임에 빠여 또다시 침미(沈迷)함에 이르려 하늘을 속이고 군부(君父)를 속인바 되어 이제 어떻게 반성을 하여야 할지 모르겠아옵니다. (往歲之秋 殿下特加譴責 臣於其時稍自悔悟 指天為辭庶不貳過 及緣尚有童蒙之習墮於小人尋復沈迷 遂至欺天欺父欺君而莫之省也)

신의 죄를 생각할때 스스로 용서받을 뜻 없애옵니다. 그러므로 어찌 감히 스스로 버릇을 고치겠다는 말씀을 할 수 있겠아 오이까만은 어린 강보로부터 24년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잠시를 부왕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음에 이제 이렇듯 궁밖에 내친바되어 다시 우러러 뵈을

길이 없게 되었아옵니다. 전일에 좌우에서 전하를 뵈실 때를 생각 하옵건데 전하의 옥음(玉音)을 들으며 여러 아우들과 내정에서 즐겁게 노니던 일인 이제는 꿈속의 것이 되었아오니 신은 이제 마음 둘바를 모르겠따 암니다. (追思前日 喜侍左右 獲奉天語 又與諸弟 嬉遊內庭 慶夢中之事 為心之難)

그럼에도 전하의 자애하신 마음은 아직까지도 그치지 아니하와 신이 불초함에도 신을 잊지 않으신다 하오니 신은 커다란 탄식과 눈물이 흐름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겠사옵니다. 지난번에 감히 스스로 여덟가지 조목으로 종묘에 맹서를하고 이제 또다시 자신(自新)의 뜻을 전하에게 올리오며 앞으로는 간사한 무리들을 멀리하고 바른 선비들을 가까이 할것이며, 그리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오니 전하게서는 어여삐 보시오소서. (敢以自誓八

條 宗廟之靈 且書悔過自新之意 仰瀆天聽 乞將以後 以杜謠諛之路 親近正土 得為成人伏惟殿下 垂憐焉)

태종은 크게 기뻐했다. 그날로 세자를 궁중 세자궁으로 돌아오게 영을 내렸다.

정부 공신들과 육조 대간 및 입직총제들은 상서를 올려 하례(賀禮)를 드렸다. (世子悔過不勝喜賀)

태종께서도 매우 만족해 했다.

『파인이 다시는 세자를 보지 않으려 했더니 이 제 세자가 뉘우침을 하였으니 파인 또한 기쁘도다. (不欲見世子今也 悔過予亦喜焉)』 이리하여 어리사전은 일단 조용해졌다. 궁중은 또다시 화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이 어리사전은 뒷날 끝내 큰 파국을 다시 물고왔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민원안내〉

농수산부 민원 우편제도 안내

정부는 민원발급대상을 36개 원·부·처·청으로 늘리고 취급민원도 20종에서 1백58종으로 확장하는 등, 민원우편제도를 크게 확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실시키로 했다.

민원우편제도는 체신부가 금년초에 신설한 우편민원서비스로 종전 일반우편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겪던 민원발급 수수료 송금과 그 잔액 반환상의 불편을 덜게 하기 위해 민원우편의 발송과 회송시 현금을 봉투에 동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민원서류발급과 송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제도로 체신부는 이 제도 신설후 지금까지 내무부관계 민원

20종만을 취급해 왔었다.

이 제도를 이용,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20원짜리 민원우편봉투를 구입 민원발급 수수료와 함께 넣은 후 봉투에 왕복등 기속달요금(9백20원)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여 접수시켜야 하며 우체국은 이를 등기속 달로 민원발급기관에 송달하고 민원발급기관에서는 신속히 처리, 우체국에 회송하여 신청인에게 보내주게 되어 있다. 농수산부 취급 대상민원목록은 다음과 같다.

△ 농수산부(7)=경력증명, 시료수입추천, 주요 농작물수입추천, 농약제도(수입) 품목등록신청, 동물약품등 수출입품목허가, 교육수료확인서, 수의사면허증재교부신청